※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양식 제6호]

[様式第6号]

파양신고서
養子離縁届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구분 区分		양부 養父				양모 養母			
① 양친 ① 養親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한자 漢字	(성)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 기준지 登録 基準地								
	주소 住所								
② 양자 ② 養子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한자 漢字	(성)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 소 住所								
③ 양자의 친생부모 ③ 養子の実父母	부 父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모 母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④기타 사항 ④その他の事項					
⑤재판확정일자 ⑤裁判確定日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裁判所の名称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⑥同意者 (成年後見人)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⑦신고인 ⑦届出人	양부 養父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양모 養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양자 養子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1)소 제기자 (2)소의 상대방 (1)提訴者 (2)訴訟の相手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전화 電話 番号	
			이메일 電子 メール アドレス	

⑧신고인 출석 여부 ⑧届出人の出席有無	(1) 양부 (2) 양모 (3) 양자 (4) 소 제기자 (5) 소의 상대방 (1) 養父 (2) 養母 (3) 養子 (4) 提訴者 (5) 訴訟の相手

⑨제출인 ⑨提出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欄①及び欄②：法第25条第2項に基づき、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た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④：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⑤란: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欄⑤：裁判上の離縁の場合、裁判確定日及び裁判所の名称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⑥란: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欄⑥：成年被後見人である養父母が成年後見人の同意を得て協議上の離縁をする場合に記入してください[但し、養子が未成年者若しくは成年被後見人である場合は協議上の離縁はできません]。

⑦란: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欄⑦：養子欄は離縁する養子が署名又は捺印し、離縁裁判が確定した場合は提訴者又は訴訟の相手が単独で届け出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場合も当該項目の番号に「○」をつけて署名又は捺印します。

⑨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欄⑨：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첨부서류
添付書類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以下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1. 離縁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養子縁組関係証明書　各1通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裁判上の離縁の場合、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部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3. 離縁調停（和解）成立の場合、調停（和解）調書謄本及びその送達証明書 各1部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成年被後見人である養父母が成年後見人の同意を得て協議上の離縁をする場合、成年後見人の同意書（但し、同意した成年後見人が「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は除く）及び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韓国の方式による離縁：協議離縁の場合、国籍証明書（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裁判離縁の場合、国籍証明書（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 파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外国の方式による離縁：離縁証明書謄本1部及び 国籍証明書（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1部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6.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① 裁判上の離縁（証書謄本による離縁を含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6項の①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② 협의파양의 경우

② 協議離縁の場合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が欠席し、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提出者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に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送で提出する場合：届出人全員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